행위의 위법성·신고 절차·학칙 변경, 명확한 가이드라인 시급

▶1면에서 이어짐

교직원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교원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학의 가이드라인 수립은 꼭 필요하다

서울캠 교무과 역시 "김영란법 시행 초기라서 완벽한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지만, 양 캠퍼스 교무과와 학사지원과 간에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확실한 대안이 나오면 학생들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취업을 앞둔 한 4학년 학생은 "학교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얼른 속 시원한 대안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앞서 살펴본 취업계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의 우려 역시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논란, 또는 혼란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김영란법이 지금까지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법인 까닭이다. 법조문은 있으나 이를 실제에 적용하는 법원의 해석 즉, 판례가 부재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도 '청탁' 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 같은 이유로 학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도 '청탁'을 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수강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교수에게 성적을 올려달라는 암묵적인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교수는 이번 학기에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 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교수가 그 음료수를 받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청탁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지난 학기 수업을 진행했던 교수에게 감사의 의미로 1만 원짜리 꽃과 1만 원짜리 음료수를 사다드린 경우는 어떨까. 지난 학기의 수업 담당 교수라면 현재 학생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만일 한 번에 여러 물품을 선물한다면 합산가 5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꽃과 음료수를 합하여 2만 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가령 석사 과정생이 특정 교수에게 지도 교수 신청을 하며 선물을 하는 경우, 혹은 논문 심사를 마친 후 사례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엔 교수가 처벌될 수 있다. 이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이 아닌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을 올려달라는 메일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자기 자신을 위한 청탁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내려달라는 부탁은 어떨까. 현재 우리 학교 학사정보에는 'B-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이라고만 표기 되어있고, 성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여 재수강하는 행위가 허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학점을 내려 달라고 교수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을 교수가 합당한 이의제기로 받아들인다면 학점을 내릴 수 있지만, 청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지 않다. 이렇듯 논란의 여지가 많기에 반드시 학교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김영란법 적용의 이러한 모호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인원이 많은 대형 강의에서 항상 교수님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커피를 사다드리곤 했다"며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담이 줄었다"고 반가워했다. 반면 "교수님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것들도 성적을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이제 따로 찾아뵈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한 학우도 있었다.

교직원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캠에서는 지난 달 21일, 국제캠에서는 지난 달 28일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숙지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첫 번째로, 교수들 안에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나뉜다는 점이다. 현재 김영란법 대상자는 고등교육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의 교원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경희의료원의 모든 교원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수, 외래교수, 시간강사는 모두 '교원 외'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속칭 '시간강사법'이 시행된다면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라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죄를 묻는 속지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인 교수도 적용대상이다.

학교측 가이드라인 마련해 구성원 혼란 줄여야

두 번째로, 시간당 100만 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외부강의'의 경우는 사전신고가 의무라는 점이다. 여기서 직무연관성이란 학생에게 강의를 하는 것, 연구를 하는 것, 전문 분야의 학술대회 등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는 것과 언론사나 학회지에 기고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회의형태의 자문의 경우는 규제 대상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는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문제는 이 '사전신고'를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항목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 측의 신속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요구되는 지점 중 하나다.

세 번째, 앞서 학생 사례에서 살펴봤듯, 맥락에 따라 학생에게 받는 식사나 금품이 허락될 수도,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수가 학생에게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금품은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이 교수에게 식사 혹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교와 의례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이 때는 '3.5.10 규정', 즉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선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렇듯 시행초기 단계인 김영란법은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학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취업계는 인정이 되는지, 성적을 내려서 재수강을 할 수 있는지, 사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눈앞에 닥친 많은 상황을 해결할 가이드라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법 자체가 신생 법안인데다 이 법을 둘러싼 해석의 여지가 모호한 것이 현 상황이므로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겠지만,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구성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됨을 상기해볼 때이다.

2016학년도 2학기 본전공(제1전공) 선택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본전공(제1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제1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10. 4(화) ~ 10. 10(월)
- **신청대상 :** 학부(과) 단위 입학생 중 세부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
  - 해당학부 : 영어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언론정보학부, 언론정보학과(2010학년도 입학자), 경영학부, 관광학부(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생활과학부
  - 예외학부 : 전공배정제와 전공 확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호텔관광대학(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자율전공학과, 미술학부, 무용학부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1전공" 란을 선택하여 소속 학부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 → "저장" 클릭
  - 신청한 본전공(제1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
  - 본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편제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전공(제1전공)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 매 학기 본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한 전공을 변경할 수 있음

  ※ 본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16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취소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포기기간 :** 2016. 10. 4(화) ~ 10. 10(월)
- **다전공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인 자
    2)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신청만으로 이수신청을 승인함
    3) 국제캠퍼스 학생 중 서울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도 동일하게 신청함
    4)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 학사지원과 안내문 참조
    5)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음(본인의 전공 외에 2개 전공의 다전공 가능)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호텔관광대학 학생의 동일학부 내 다전공 신청에 관한 사항은 호텔관광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 다전공 선발 인원
    1) 전년도(2015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단, 경영학전공은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 국제 캠퍼스별로 각각 선발함
    2) 연간 선발인원으로 1학기 선발 후 잔여인원을 2학기에 선발함
    3)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제한 없음
  - 다전공 선발 기준: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함

    ※ 경영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기준
    – 경영학전공 : 전학년 평점평균 3.3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 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회계 · 세무학전공 :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다전공 선발 학과(첨부 선발 정원 및 다전공 이수불가 전공 참조)
    1) 다전공 이수는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함. 단, 폐지된 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국제통상 · 금융투자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소속 전공 중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제외함
    2) 다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전공 신청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2전공" 란에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제3전공"까지 선택 가능) → "저장" 클릭
       ※ 학부편제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제1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1전공 신청 후 제2전공 신청을 진행해야 함
    2) 신청한 본전공 및 다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2개 트랙까지 신청가능)
    3) 전공 신청정보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신청정보에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다전공 포기 안내**
  - 대상 : 이수 중인 다전공의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 포기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이수 중인 다전공 전공명을 선택 → 빈 칸을 선택 → "저장" 클릭
    2) 전공 신청정보에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다전공 포기를 한 경우, 다시 다전공을 이수하려면 새로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포기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2) 편재가 개편되어 다전공을 포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사지원과(961–0053~4)로 문의바람
- **다전공 승인 및 포기 확인 기간 :** 2016. 10. 19(수) 예정
  - 확인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2) 승인된 경우 "상태"필드의 내용에 "Y"로 표기됨
  - 유의사항 : 다전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다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16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전공트랙과정"이란 학과의 교육과정 안에 마련된 전문화된 전공교육체계로,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들을 일종의 계통도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학업 목표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에 대하여 전공트랙과정을 신청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를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10. 4(화) ~ 10. 10(월)
- **신청대상 :** 전공 트랙교육과정 신청 또는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 **대상전공**
  -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본전공(제1전공)
  - 이수가 승인된 제2전공(또는 제3전공) 중 전공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된 전공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 전공란 우측 "전공트랙" 란을 Pull–down 메뉴로 희망하는 트랙을 선택 → "저장"

  ※ 유의사항
  1) 전공 승인신청 시 함께 신청한 전공트랙은 전공 승인 불허시 함께 취소됨
  2) 단과대학별로 트랙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3) 한 전공당 트랙은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함
  4) 본전공(제1전공) 신청은 학생의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선택가능하며, 졸업시에는 [학칙] 경과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기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 전공란 우측 "전공트랙" 을 공란으로 변경 → "저장"
- **유의사항**
  - 승인된 전공 및 트랙과정은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해야 함
  - 매 학기 트랙 신청기간에 신청한 트랙교육과정을 변경 및 포기가 가능함
  - 트랙과정을 신청하였거나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함
  - 각 전공별 트랙과정의 세부 이수요건에 관해서는 학과별 교육과정 시행세칙 또는 붙임 전공별 트랙교육과정 이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 트랙교육과정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경희대학교 교무처